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 검 토 보 고 서

2023. 10. 17.(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한동 의원 외 10명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이한동의원 외 10명
- 제안일 : 2023. 10. 6.
- 회부일 : 2023. 10. 10. (의안번호 : 23-129)

## 2. 제안이유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동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산업·경제·문화·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금 적립액 중 지출액 비중이 낮음. 이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하여 운용하는 등”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동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동 조례의 목적을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추진”에서 “교류협력,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증진”으로 확대함.
  
- 구청장의 역할 명시(안 제2조제2항)
  - 남북교류협력 및 마포구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역할을 규정함.
  
-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및 운용의 범위를 확대함.
  - 또한, 안 제4조제2항에 마포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격려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입법예고: 2023. 8. 17. ~ 8. 21. 결과: 의견 없음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 5. 기금조성현황

### <2023년도 말 남북협력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2년도 말 조성액 ㉠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 ㉡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587,798	58,002	30,000	28,002	615,800	

## 6.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이한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동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산업·경제·문화·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금 적립액 중 지출액 비중이 낮음.
- 이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하여 운용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항별 검토
  - 가. 안 제1조에 동 조례의 목적을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사

업 추진”에서 “교류협력,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증진”으로 개정 확대하는 내용임.

나. 안 제2조제2항에는 남북교류협력 및 마포구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임.

다. 안 제4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및 운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안 제4조제2항에는 마포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격려금 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임.

## 7. 종합 검토의견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과 북이 통일을 대비해 준비하는 기금이나, 현재 남과 북이 경색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동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산업·경제·문화·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으로 사업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매년 기금 축적액은 2023년 말까지 6억 1,580만원이 조성될 예정이나 사실상 사업범위의 제한으로 지출은 어려운 실정임.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도 성과가 부진하거나 설치 목적이 달성된 기금

은 불필요할 경우 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종전과 같이 유지되어 지출이 되지 않는다면 통·폐합 등 정비가 필요할 것이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하여 운용하는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착지원에 운용하는 본 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남과 북이 경색단계에서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금의 조성은 계속적으로 적립이 요구되며, 개정된 조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출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별표 1]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